|  |  |  |  |
| --- | --- | --- | --- |
| **어린이제품명** | 완구 | **제조국명(필수)** | (한글 표기 / 국내인 경우 시•도까지 기입) |
| **모델명(필수)** |  | **제조업체명(필수)** | (수입인 경우 영문 작성)(국내 제조의 경우, 신고인과 일치해야하며, 사업자 업태에 제조업이 등록되어있어야함) |
| **성적서 종류** | ■ KOLAS 성적서 □ 일반 성적서 | 시험ㆍ검사 후 시료 반환 ( O / X ) |
| **용 도****(용도 외 금지)****(필수)** | □ 안전확인 신고용 □ 재검사(최초 접수번호 : )□ 동일모델 추가 (신고확인 접수번호 / 신고확인증 번호 : )□ 동일모델 확인 (신고확인증 번호 : ) |
| **성적서 수령방법** | □ 방문수령 □ E-MAIL □ 우편 (주소 : ) |
| **배터리** | □ 1차전지 (종류 : ) □ 2차전지 (종류 : )  |
| **완구 포장** | □ 버려지는 일회용 □ 보관의 용도 (다회용, 놀이의 기능포함 등) |
| **사용연령****(필수)** | 영·유아용 완구 | □ 3세 미만 | **작동성 구분****(필수)** | □ 작동 완구□ 비 작동 완구 |
| 어린이용 완구  | □ 3세 이상 ~ 8세 미만 |
| 어린학생용 완구 | □ 8세 이상 |
| ※ 표시사용연령 ( 제품에 실제 표기된 사용연령 ) |
| **기능 및 특성 구분(필수) (주요 용도 한곳만 √표시)** |
| □ 활동 | □ 미술공예 | □ 퍼즐 | □ 파티 | □ 봉제인형 | □ 기능성 | □ 게임 | □ 승용 |
| □ 발사체 | □ 역할놀이 | □ 악기 | □ 운동 | □ 유아 | □ 블록 | □ 모형 | □ 자석 |
| □ 조종 | □ 가구 | □ 교육용(교구) | □ 조립 | □ 기타 |  |  |  |
| **재질 구분(필수)****(주 재질 한곳만 표기)** | □ 섬유 □ 목재 □ 종이 □ 액체 □ 점토 □ 금속 □ 플라스틱 □ 기타  |
| **[확인 사항] (필수)** |
| 완구에 자석 또는 자석부품 사용여부 | **□ 사용** | **□ 미사용** |
| 완구에 셀룰로이드 및 셀룰로이드와 같은 형태로 연소하는 재료사용여부 | **□ 사용** | **□ 미사용** |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1.6항에 따른 사용금지 물질인 석면의 사용여부 | **□ 사용** | **□ 미사용** |
| 1. [KOTITI 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2. 제품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3. 최근 1년 이내「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 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 3항에 따라 1년 이내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 시험·검사 불가) [ □ 예 □ 아니요 ] *(미기재시 효력상실 처분 해당 없는 제품으로 진행)*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위 신청서 내용에 허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신 청 인: (서명) |
| **회 사 명** | 국 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영 문 : |
| **주 소** |  | **T E L** |  |
| **대 표 자** |  | **E-mail** |  | **F A X** |  |
| **의 뢰 자** |  | **세금계산서 발행E-mail** |  | **H . P** |  |
| **청구 회사명** | (해당시 작성) | **TEL(청구 회사 연락처)** |  |
| **의뢰자** |  | **H . P** |  |
| **청구 회사 주소** |  | **세금계산서 발행 E-mail** |  |
| ■ 시험ㆍ검사 항목에 따라 시험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ㆍ검사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02-3451-7088/7431/7417,02-6191-6156]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OPF-04-16(rev.04)  *KOTITI*



**제 품 설 명 서**

|  |
| --- |
| **제품 사진**  |
| (컬러사진 및 완제품으로 첨부할 것(부자재, 포장(케이스.박스 등)사진 추가 첨부) |
| 제품의 용도(사용 방법, 설명서 등 간략히 기입) |  |
|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 |
| 품명 | 완구  |
| 모델명 | 안전확인 신고서 기재된 모델명 |
| 제조연월 | 실 제조연월 표기 |
| 제조자명 | 실 제조자명 표기 |
|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  |
|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전화번호 모두 기입 |
| 안전 표시 (주의·경고 등) | (해당 시 안전표시 기입) |
| 사용연령 | 제품에 실제 표기된 사용연령 |
| 크기 및 한계체중 | 코스튬(의류)완구: 크기(치수) 표기.예)S , M , L 또는 둘레, 길이등승용완구 , 의자 등 어린이가 탑승하는 제품 최대하중 “ kg”로 표기. 사용연령 “ 세 이상 세 미만”으로 표기 |
| 제조국명 |  |

|  |
| ---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  | (앞 쪽)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
|  |
| 신고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
| 확인 신고 내용 | 어린이제품명 | 품목분류번호(HS) |
| 안전기준상의 모델 구분 | 제조업체명 |
| 제조국명 | 제조자 제시 모델명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KOTITI 시험연구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1부 | 수수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제48조에 따른 수수료 |
|  |
| 신고확인증 번호 |  |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년 월 일(유효기간 : 년 월 일)

|  |  |
| --- | --- |
| **KOTITI시험연구원장**  | 직인 |

 |
| 처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확인 | ⎝ | 신고확인증 작성 | ⎝ | 신고확인증 발급 |

 |
|  | 신고인 |  | 처리기관(안전인증기관) |  | 처리기관(안전인증기관) |  | 처리기관(안전인증기관) |  | 처리기관(안전인증기관) |  |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 |
| **KOTITI시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1.1 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한 신원확인1.2 신청한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전달 및 처리결과 전송1.3 서비스 신청 건에 대한 요금의 결제 및 정산**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2.1 신청인의 이름 2.2 주소2.3 전화번호2.4 휴대폰 번호2.5 팩스 번호2.6 전자우편 주소**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신청인은 [KOTITI 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KOTITI 시험연구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 개인정보의 제공**KOTITI시험연구원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신청인이 신청한 서비스 업무 용도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5.1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5.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른 경우 |